**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데이터 거래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통플랫폼(www.ooo.co.kr)을 운영하는 ○○○(이하 “플랫폼운영자”라 한다)와 위 플랫폼(www.ooo.co.kr)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데이터제공자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구매하는 □□□(이하 “데이터이용자”라 한다) 간의 권리･의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제공”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로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3. “거래”란 데이터를 대가로 받고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플랫폼”이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 간에 데이터의 거래 등을 매개하기 위해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가공･저장･검색･유통･송신 또는 수신(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5. “플랫폼운영자”란 데이터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데이터제공자”란 데이터이용자와 데이터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데이터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7. “데이터이용자”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데이터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8. “데이터이용자 정보”란 데이터 거래에서 데이터제공자 또는 플랫폼운영자가 데이터이용자로부터 수집･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계약의 이행 및 준수)**

①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각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 및 이행에 있어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플랫폼 이용 관련**

**제4조(플랫폼 이용계약)**

① 플랫폼 이용계약은 플랫폼을 이용하려는 데이터이용자의 청약과 플랫폼운영자의 승낙으로 성립한다.

② 플랫폼을 이용하고자 하는 데이터이용자는 플랫폼운영자가 정한 플랫폼 이용신청양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플랫폼 이용신청을 한다.

③ 플랫폼운영자는 다음의 각 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플랫폼 이용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이미 가입된 법인과 그 상호 또는 명칭(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이름),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

2. 데이터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 ]개월 이내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플랫폼운영자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계약위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5조(계약기간)**

① 본 플랫폼 이용계약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_\_\_\_\_\_\_\_\_까지([ ]개월)로 한다.

② 각 당사자가 제1항의 기간만료 [ ]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의 종료 의사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동일한 내용 또는 조건으로 [ ]년씩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본다.

③ 계약기간 중 당사자들이 본 계약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플랫폼서비스”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데이터의 거래 관련 중개 및 지원서비스

2. 데이터의 거래 계약체결 관련 중개 및 지원서비스

3. 데이터 정보 검색 서비스

4. 그 밖에 플랫폼 관련 서비스

**제7조(플랫폼서비스 제공에 관한 플랫폼운영자의 책임)**

①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2. 플랫폼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정보보호 기준 수립

3. 안정적인 플랫폼 이용을 위한 정기적인 운영점검

4. 플랫폼 이용에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수리 및 복구

5. 정보 유출 또는 제3자에 의한 데이터제공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수준의 보안서비스 제공

6. 데이터이용자의 동의 없이 데이터이용자 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목적 외 용도 이용 금지

7. 데이터이용자가 플랫폼 이용현황･이용요금 등 이용내역, 데이터 거래내역이나 결제현황 등을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수단 제공

8. 계약의 주요사항을 데이터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 제공

② 플랫폼운영자는 제1항 제3호의 경우 사전에 데이터이용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고, 제4호의 경우 지체 없이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정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제공자가 등록한 데이터 정보를 데이터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플랫폼서비스 이용에 관한 데이터이용자의 책임)**

① 데이터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플랫폼 이용요금 납부의무

2. 연락처, 요금결제 수단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 변경 시 플랫폼운영자에 대한 통지의무

3. 본 계약의 규정 및 플랫폼 이용과 관련하여 플랫폼운영자로부터 통지받은 제반사항의 준수의무

② 데이터이용자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지식재산권 등 권리를 침해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데이터이용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플랫폼 접속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관리부실로 인한 도용 또는 제3자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의 책임을 진다. 다만, 플랫폼운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플랫폼서비스 제공의 정지)**

①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플랫폼서비스 제공을 일정 기간 동안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플랫폼서비스 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1. 플랫폼서비스 제공을 위한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정기점검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플랫폼서비스에 대한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 전자적 침해사고, 설비 장애, 통신사고, 서비스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플랫폼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천재지변, 비상사태, 정전 등 플랫폼서비스에 대한 불가항력 사유로 정상적인 플랫폼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플랫폼상에서 위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② 플랫폼운영자는 제1항 제1호의 경우 플랫폼서비스 제공을 정지하기 전 [ ]일까지 그 사실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제1항 제1호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로 인해 플랫폼서비스를 정지하게 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주소불명 등 데이터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알릴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플랫폼서비스 이용제한)**

①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데이터이용자의 플랫폼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플랫폼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 등의 손상･정지 등을 초래하는 행위

2. 시스템 운영이나 네트워크 보안 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3. 본 계약의 규정에 위반하여 플랫폼서비스에 대한 플랫폼운영자의 업무수행 또는 플랫폼서비스 제공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② 플랫폼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데이터이용자의 플랫폼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와 이용제한 기간, 이의신청 방법을 해당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장 데이터 거래 중개 관련**

**제11조(데이터 거래 중개에 관한 플랫폼운영자의 책임 등)**

① 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데이터 거래 중개서비스(이하 “중개서비스”라 한다)는 통신거래중개서비스로서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가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플랫폼을 이용한 데이터 거래를 중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의 거래와 관련하여 데이터제공자 또는 데이터이용자를 대리하거나 데이터제공자 또는 데이터이용자의 상대방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플랫폼운영자는 플랫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등록된 데이터의 품질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데이터제공자 또는 데이터이용자가 입력하는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링크된 URL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적법성 등 일체에 대하여 보장하지 아니한다.

③ 데이터이용자가 본 조 및 플랫폼운영자가 정한 중개서비스 이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데이터 거래 제한, 이용자 아이디 사용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 관련 정보 게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그 게시에 있어 특정 데이터를 현저히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데이터 거래 중개에 관한 데이터이용자의 책임)**

①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제공자가 등록한 데이터 정보와 거래조건(데이터의 종류와 범위, 가격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고 거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제공자와 사이에 성립된 거래 및 자신이 제공한 정보와 관련하여 분쟁 또는 위법사항이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 거래를 위한 계약을 취소･해제하거나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거래 대상인 데이터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하고, 데이터의 폐기 및 미보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이용자는 등록된 데이터에 특별한 거래조건이 있거나 추가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데이터제공자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데이터 거래 중개서비스 제공 및 변경)**

①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중개서비스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한 7일 전부터 해당 서비스의 초기 화면에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② 플랫폼운영자는 중개서비스의 내용 또는 조건의 변경이 데이터이용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최소 30일 전부터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중개서비스의 내용 또는 조건의 변경이 데이터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데이터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플랫폼운영자는 중개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연중무휴, 1일 24시간 중단 없는 중개서비스의 제공. 다만, 정기점검이나 시스템의 성능향상을 위한 작업 등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한 경우에 중개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2. 중개서비스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수리 또는 복구

3. 그 밖에 중개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관련 업무

④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의 문의나 요청을 대응하고 처리하기 위한 담당부서, 담당자의 이름 및 연락처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4장 권리 구제**

**제14조(침해사고 발생 시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통지)**

①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침해사고

2. 데이터이용자 정보의 유출

3.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예고 없이 [ ]시간 이상 중개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4. 사업의 폐지를 결정한 경우 또는 플랫폼서비스의 종료를 결정한 경우

5. 그 밖에 데이터이용자의 중개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플랫폼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리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데이터이용자가 미리 지정한 전화

2.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3. 전자우편

4.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등의 접속화면에 게시

③ 플랫폼운영자는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항의 방법으로 해당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발생내용

2. 플랫폼운영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3. 데이터이용자의 피해 예방 또는 확산 방지 방법

4. 담당부서 및 연락처

**제15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 ]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은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각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플랫폼운영자가 플랫폼서비스를 [ ]일 이상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데이터이용자가 제8조에서 정한 데이터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제10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플랫폼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데이터이용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4.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고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은 제외) 등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파산, 화의, 정리,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받거나 스스로 그러한 신청을 한 경우

8.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담보제공 등 처분하는 경우

9. 불가항력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③ 본 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이미 발생한 권리관계 및 각 당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에는 상대방이 해제권자 또는 해지권자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⑤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에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손해배상)**

각 당사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면책)**

① 플랫폼운영자는 통신거래중개자로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거래시스템만을 제공하고, 데이터이용자와 데이터제공자 간 거래에 관하여 발생한 분쟁에 개입하지 아니하며, 해당 분쟁의 결과로 인한 손해 등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하여 데이터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플랫폼운영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한다.

1. 제7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플랫폼서비스 점검이 불가피하여 제7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알린 경우로 플랫폼운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2.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플랫폼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 상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데이터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플랫폼운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4. 플랫폼운영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5. 데이터이용자의 컴퓨터 오류, 사업자 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의 부정확한 기재 등으로 데이터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플랫폼운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③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플랫폼서비스 내 또는 플랫폼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전송한 정보 및 자료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제18조(불가항력)**

① 각 당사자는 지진, 태풍, 홍수, 수해, 대규모 화재 등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 전쟁, 기타 예측이 불가능하고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는 원인(이하 “불가항력”이라 한다)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각 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일반 사항**

**제19조(완전합의)**

① 본 계약서는 본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루어진 당사자 간의 모든 합의 및 의사표시를 대체하며, 기존의 모든 합의 및 의사표시는 본 계약의 체결로 효력을 상실한다.

② 본 계약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만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변경은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0조(일부 무효)**

본 계약의 일부 조항이 무효 또는 이행불능으로 인정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실은 본 계약의 다른 조항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

**제21조(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담보제공 등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통지)**

본 계약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통지 등은 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의 주소로 우편, 전자문서 등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은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의 원인에 따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34조의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저작권법」, 「발명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③ 각 당사자는 제2항의 분쟁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피고의 본점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4조(준거법)**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